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나53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희정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윤

변론 종결 2019. 12. 5.

판결 선고 2020. 1. 30.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5. 17. 선고 2018가소1146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0,959원 및 그 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11. 8.부터, 1,320,959원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1 2011. 11. 8. 604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100만원, L 2011. 11. 8. 판결금 채무의 변제조로 100만 원, © 2014. 4. 14. 판결금 채무의 변제조로 1,320,959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는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된 것이 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7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7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와 C(이하 '원고 부부'라고 한다), 피고와 D(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은 각 부부로서 서로 많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

1) 피고는 원고 부부를 상대로 합계 3,518만 원의 어음금 및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0043호), 2006.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1,569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피고가 항소를, C는 부대항소를 각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 2977호), 2008.

9. 5. 위 법원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1,000만 원 및 차용금 1,414만 원 중 변제 또는 정산된 나머지 금원이 1,469만 원이고, 그 중 2004. 2.10.자 대여금 200만 원은 C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차용하였으므로, C는 피고에게 1,469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한편,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04. 7.경부터 2004. 8.경까지의 604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더 있음을 전제로 위 돈에 대하여 원고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1) 피고 부부는 2009. 11. 8. 원고 부부의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가 원고 부부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부부에게 '2009. 11. 8. 200만 원을 입금함'이라고 기재된 입금증(갑 제26호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결혼식이 끝난 직후 피고에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일금 이백만 원정. 단, 상기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604만 원 중 차용증 없이 A에게 아침 11시경 지급한 금액 포함됨. 상기와 같이 정히 정수함. 2009. 11. 8. 영수인 B. 예금주 D E 국민은행'이라고 기재된 영수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2004년 100만 원 인정. A. 2009. 11. 8.'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와 '나머지는 매달 50만 원씩 지급함. 2009. 11. 8. A.'라고 기재된 각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제2차 확정판결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C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금 1,269만 원에 대하여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보증하였으므로 위 1,269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56301호), 201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금원의 변제를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한 금액에 관한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3127호), 2013.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판결금 1,269만 원을 보증하였거나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이 사건 각서로서 100만 원을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원고 자녀 결혼식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며 돈을 지급할것을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의 의사표시 내지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그와 같은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다시 상고 및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3다100200호), 2014. 4. 10.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2, 13, 1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8. 피고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00만 원을 이 사건 제1심확정판결에서 기각된 604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충당하겠다고 얘기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604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2009. 11. 8.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 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1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604만 원의 지급 청구가 인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9. 11. 8.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원고에게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604만 원 중 차용증 없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영수증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내용을 인정하는 의미로 피고에게 '2004년 100만 원 인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200만 원 중 위와 같이 변제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604만 원의 지급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고가 새롭게 피고와 사이에 위 변제금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604만 원의 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적법하게 위 금원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200만 원 중 100만 원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위 확인서 등의 작성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변제충당의 합의 과정에서 원고가 착오를 하였다고보이지도 않는다), 위 판결의 기판력이 작용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이석준, 판사 허서운